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교 4명)하고, 소방청 주요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4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9급 또는 소방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또는 소방교 1명)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12.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6조제1항 중 “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를 “특수장비과·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를 “특수대응훈련과장특수장비과장·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16.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제6조제4항(중전의 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제6조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장비항공과장”을 “특수장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2.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3.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9. 관할구역 내 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10.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11.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12. 기타 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 중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활동”을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를 “인력·장비·구조장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8”을 “284”로,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소방위 “61”을 “65”로, 소방장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8”을 “284”로,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소방위 “56”을 “60”으로, 소방장 “17”을 “1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91”을 “488”로, 소방공무원 계 “391”을 “388”로, 소방정 “7”을 “8”로,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위 “65”를 “63”으로, 소방장 “75”를 “74”로, 소방교 “93”을 “97”로, 소방사 “85”를 “81”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91”을 “488”로, 소방공무원 계 “391”을 “388”로, 소방정 “7”을 “8”로,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위 “64”를 “62”로, 소방장 “75”를 “74”로, 소방교 “93”을 “97”로, 소방사 “85”를 “8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 정원 4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생략)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u> 12. <u>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 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u>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특수대응훈련과· <u>특수장비항공과</u>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 <u>특수대응훈련과장</u> 및 <u>특수장비항공과장</u> 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 ----- ----- <u>특수장비과·중앙소방항공대</u>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② ----- <u>특수대응훈련과장·특수장비과장·중앙소방항공대장</u> 은 소방정으로, 119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조정 기능

2. 삭제

3. 삭제

4. 재난 진행상황·피해 등 정보의 수집·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11. 삭제

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삭 제>

12. 삭제

13. 삭제

14. 화학·생물·방사능·핵·
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15.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16. 삭제

17. 삭제

1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
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
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
영

19. 삭제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 13. 삭제

<신설>

<신설>

<신설>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4.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
설·장비의 유지 관리

16.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

<신 설>

14. (생 략)

⑤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8.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⑥ 특수장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11.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 사항

17.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20. (현행과 같음)

21.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⑤ 특수장비과장-----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3.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
항

<삭 제>

15.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
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삭 제>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삭 제>

17.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삭 제>

<신 설>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2.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
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3.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
의 수립 및 시행

5.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
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
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

⑦ (생략)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생략)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u>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u> 3. <u>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u> 4. 5. (생략) 6. 소속 <u>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u>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u>발 및 보급</u> 8. <u>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u> 9. <u>관할구역 내 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u> 10. <u>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u> 11. <u>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u> 12. <u>기타 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u>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u> <삭제> 4. 5. (현행과 같음) 6. --- <u>인력·장비·구조장비</u> -----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78</u>		<u>284</u>	+6	
소방공무원 계			<u>233</u>		<u>239</u>	+6	
	.		.		.		
	.		.		.		
소방위			<u>61</u>		<u>65</u>	+4	
소방장			<u>18</u>		<u>20</u>	+2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78</u>	• <u>284</u>	+6
소방공무원 계	<u>233</u>	<u>239</u>	+6
•	•	•	
•	•	•	
소방위	<u>56</u>	<u>60</u>	+4
소방장	<u>17</u>	<u>19</u>	+2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91	488	-3
소방공무원 계	391	388	-3
소방정	7	8	+1
소방령	24	23	-1
소방위	65	63	-2
소방장	75	74	-1
소방교	93	97	+4
소방사	85	81	-4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91	488	-3
소방공무원 계	391	388	-3
소방정	7	8	+1
소방령	24	23	-1
소방위	64	62	-2
소방장	75	74	-1
소방교	93	97	+4
소방사	85	81	-4